

경기도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부여 오류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성사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지된 평가계획대로 시행(채점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 학교에서 수행평가는 교과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타당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평가 시기·영역·방법·횟수 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성사고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2021학년도 수행평가 관리를 하면서, 공지된 평가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채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세부기준(배점)을 지키지 않아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020~2021학년도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부여 오류 내역

연번	학년도	교과목	오류건수	오류 내용	비고
1	2020-2학기-1학년	국어	2	세부기준(배점)을 지키지 않음	
2	2020-2학기-2학년	세계사	4	세부기준(배점)을 지키지 않음	
3	2021-1학기-2학년	음악	1	세부기준(배점)을 지키지 않음	

【조치할 사항】

- ① 성사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성사고등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일련번호	3-2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성폭력 사안 신고 의무 소홀

관계기관 성사고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성사고등학교는 위기 학생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과거 성폭력 사안에 대해 2021년 학교폭력(사안번호 2021-5) 사안으로 개최하였고, 학생의 가출·자살·자해 등 위험 행동이 보여 수사 기관 신고가 지연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성사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안전계획 연수 미실시

관계기관 성사고등학교

내 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학교안전계획 수립·평가의 내실화)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3월 중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성사고등학교에서는 2021~2022학년도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성사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